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7 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권영세 • 임종득

김예지 • 구자근 • 이인선

김용태 · 강승규 · 박상웅
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, 경찰청,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·운영 중에 있으나,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,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,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58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3(적합성평가의 면제) ①	제58조의3(적합성평가의 면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	
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면제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
	한 테러방지법」 제2조제6호
	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
	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
	<u>는 경우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